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6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김우영
서영교 · 박은정 · 백승아
복기왕 · 안태준 · 강경숙
이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로봇 · 자율주행차 · 도심항공교통(UAM) ·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 · 도시 · 모빌리티 ·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적용 · 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 도입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 시공 ·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와 함께, 초기 실증을 위한 선도사례 마련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특례, 실증 지원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술·혁신건축물·혁신건축물서비스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혁신건축물 지정 심의 등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혁신건축물 관련 공간정보 및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및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혁신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혁신건축물의 집적 조성과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혁신기술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선도사업을 지정하고, 보조금·세제지원·기부채납 완화·토지공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혁신건축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인증 및 본인증으로 구성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혁신건축지원센터 및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연구개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그 밖에 권한의 위임·위탁, 보고 및 검사, 벌칙 및 과태료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기술의 도입·확산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혁신기술을 건축공간에 융복합한 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편의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실증·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조성·이용·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건축·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첨단모빌리티·로봇·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이하 “혁신건축물”이라 한다)”이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도입·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설계·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서비스”(이하 “혁신건축물서비스”라 한다)란 혁신건축물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기반 서비스 또는 기능을 말한다.

가. 건축물 내외부의 이동·물류·접근체계의 자동화 및 고도화 서비스

나. 건축물의 에너지·환경·보안·유지관리의 지능화 및 통합 운영 서비스

다. 건축물 내 사람·로봇·모빌리티 간 상호작용 및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라.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분석·연계 및 디지털 운영 서비스

마. 재난 대응·공공안전·위기관리 등 건축물 기반 공공기능 지원 서비스

바. 그 밖에 혁신기술이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 또는 운영체계와 결합하여 구현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4. “혁신건축물 조성”이란 혁신건축물을 건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리모델링하거나, 혁신건축물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

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술과 혁신건축물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도시 등 기존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 관련 기반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혁신건축물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건축물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25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혁신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혁신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혁신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혁신건축물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혁신기술 및 혁신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대상이 되는 혁신건축물 소관 지방자치단
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조(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효율적인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기술 동향, 혁신건축물 조성 및 관리 현황, 시장전망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물 내외부 공간정보 및 데이터의 구축·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공간정보 및 유지·관리 등 혁신건축물에 관한 정보(이하 “혁신건축물 관련 정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과 제2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혁신건축물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건축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혁신건축물 관련 정보의 구축·활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혁신건축물의 지정 및 규제특례 등

제10조(혁신건축물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및 혁신건축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건축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혁신기술 도입 계획, 서비스 운영 방안 및 규제 특례 적용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건축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건축물을 조성하거나 혁신건축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이하 “혁신건축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혁신건축물 지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성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혁신기술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건축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혁신건축물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기술 변화에 따른 지정 내용의 변경,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혁신건축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건축물 조성 및 혁신건축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혁신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혁신건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혁신기술에 맞는 건축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혁신건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건축물과 혁신건축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 성능을 입증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사업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사업 관련 안전성 입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 방안
4. 사업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방안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특례 부여 여부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업의 혁신성·안전성·편익 등을 고려하여 특례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여야 하고, 특례의 심사기준을 혁신건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건축물과 혁신건축서비스의 허가등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특례에 대해 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혁신건축사업자가 사업 과정 및 결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혁신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①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는 혁신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1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사항
12. 그 밖에 허가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허가권자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허가권자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허가 의제 등) ① 혁신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승인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각 호의 인·허가 등

2.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각 호의 인·허가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 검토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
익허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혁신건축사업자는 혁신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등은 혁신건축물의 건축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혁신건축 진흥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촉진 및 기술 실증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혁신건축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건축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
2. 혁신건축물 관련 실증 및 성능검증 시설 등의 구축사업
3. 그 밖에 진흥구역 내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구역 내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건축주 및 건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구역 지정·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도사업

제17조(선도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및 혁신건축물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건축사업자 중 선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선도사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 등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도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선도사업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시행 중에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선도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선도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보완
4. 해당 선도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도사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위협·위해를 예방·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선도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선도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세제 감면

3.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 경우 「건축법」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준용한다.

4.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완화. 이 경우 절차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5. 그 밖에 선도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선도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 선도사업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혁신건축물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사업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혁신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

제20조(혁신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의 조성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인증(이하 “혁신건축물 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인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혁신건축물 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예비인증과 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는 본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22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승인 등”이라 한다)를 받기 전에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등은 제6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점검·평가·관리 및 감독, 예비인증 및 본인증의 세부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혁신건축물 인증의 취소 등)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혁신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혁신건축물 인증 활성화) 허가권자등은 혁신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건축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범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6장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제23조(혁신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및 지원
2. 제7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지원
3. 제20조에 따른 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등

4.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혁신건축협의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과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건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 ① 국가는 혁신건축물 조성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건축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
2. 기술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산업계 협력사업
4.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혁신건축물 및 혁신건축물서비스 관련 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혁신건축물 및 혁신건축물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
4. 혁신건축물 및 혁신건축물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건축물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건축물 관련 국제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건축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지원 시책을 마

련할 수 있다.

1. 혁신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2.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국내 혁신건축물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 및 수주 활동 지원
4.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5. 국제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혁신건축물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업무

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혁신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제23조에 따른 혁신건축지원센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혁신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2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제24조에 따른 혁신건축협의체의 구성원

제31조(업무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혁신 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의 취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1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3조(수수료) 혁신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등의 임직원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계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선도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예비인증: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

2. 본인증: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